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20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남국·김민철·김병주

오영환 · 이용우 · 이원택

임호선 · 장경태 · 장철민

정청래 • 주철현 • 최혜영

한준호 · 홍성국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84조 제1항 및 제24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4조제1항 중 "감안"을 "고려"로 한다.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"감안"을 각각 "고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
제84조(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	제84조(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					
공고)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	공고) ①					
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(그 경						
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						
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)						
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						
한 기간을 <u>감안</u> 하여 배당요구	<u>고려</u>					
를 할 수 있는 종기(終期)를 첫						
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.						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					
제246조(압류금지채권) ① 다음	제246조(압류금지채권) ①					
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						
다.			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			
4. 급료・연금・봉급・상여금・	4					
퇴직연금, 그 밖에 이와 비슷						
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						
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. 다						
만,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						
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						
<u>감안</u>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	- <u>고려</u>					
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						
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						

를	<u> 감안</u>	하여	대	통	령 5	성ㅇ		정	하
는	금액.	을 초	놀과	하	느	경	우	에 :	는
각	각 당	해 디	통	령	령 c		정	하	느
금	백으로	. 한	다.						

5. ~ 8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<u>고려</u>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